

#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43호
----------	--------

제출년월일 2025. 7.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허가·신고 수수료 비용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에 포함하여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기준 설정(안 별표3)

- 신설) 다. 가로등 현수기(2개 1조) 개당 3,000원

나.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6)

- 현행) 2)현수막 → 개정) 2)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순서(심의위원회→소위원회→간사)에 따라 조정 및 신설(안 제15조)

라. 그 밖의 용어 및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라)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 가결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나) 경 기 도 : 건축정책과

##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료(塗料)”를 “도료”로 한다.

제7조 중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람이 된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를 “당연직 위원: 옥외광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촉직 위원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② 영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32조제3항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별표 3의 제1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로등 현수기(2개 1조)	개당 3,000원
-------------------	-----------

별표 6의 제2호가목 2) 중 “현수막”을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클린도시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클린도시과장 강 지 호
	팀장 직위·성명	광고물지도팀장 김 중 훈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송 홍 준(☎4548)



가. (생략)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서 정하는 현수  
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  
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  
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 도료-----  
---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 「경기도 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제8호-----  
-----  
-----.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  
-----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옥외광고 -----
2. 위촉직 위원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영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1.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  
장이 된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⑦ 제4항에 -----  
-----  
-----  
-----.

<후단 삭제>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32조제3항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6조 제1항제1호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3,000원 2) 면적 5㎡ 초과 시 1㎡마다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30,000원 2) 면적 5㎡ 초과 시 1㎡마다 2,000원 더하는 금액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15,000원 나. 면적 5㎡ 초과 시 1㎡마다 1,000원 더하는 금액 8,000원 다.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35,000원 나.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5,000원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6조 제1항제1호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1. ----- 가. ----- 1) ----- 2) ----- -----	----- -----
나. ----- 1) ----- 2) ----- -----	----- -----
2. ----- 가. ----- 나. ----- ----- 다. ----- -----	----- ----- -----
3. -----	----- ---
4. ----- 가. ----- 나. -----	----- -----

더하는 금액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 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 량·선박 다.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 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가.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 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u>&lt;신 설&gt;</u>	
13. 입간판(1건)	3,000원
14. 벽보(1건)	3,000원
15. 전단(500매마다)	3,000원
16. 전자계시대(1건)	3,000원
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 물 수수료의 2배 를 적용(전자계시 대는 제외한다)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5. ----- 가. ----- 나. ----- -----	----- ----- -----
6. ---- 가. ----- 나. ----- 다. -----	----- ----- ----- ---
7. ----- 가. ----- 나. ----- -----	----- ----- -----
8. ----- ----- 가. ----- 나. ----- -----	----- ----- ----- -----
9. ----- 가. ---- 나. ----- ----- 다. ----- -----	----- ----- ----- -----
10. -----	-----
11. ----- 가. ----- ----- 나. ----- -----	----- ----- ----- ---
12. ---- 가. ----- 1) ----- 2) ----- ---- 나. ----- 1) ----- 2) ----- ----	----- ----- ----- ----- ----- ----- -----
다. 가로등 현수기(2개 1조)	개당 3,000원
13. -----	-----
14. -----	-----
15. -----	-----
16. -----	-----
17. -----	----- ----- ----- -----
비고 :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한다)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1. -----
2. -----
3. -----
4. 가 -----
- 나. -----
- 다 -----
5.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
- 나.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제2호 가목1)라)·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sup>2</sup> 초과 0.5m<sup>2</sup> 이하는 0.5m<sup>2</sup>로 0.5m<sup>2</sup> 초과 1.0m<sup>2</sup> 미만은 1.0m<sup>2</sup>로 계산한다.
- 라.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항 제호			
1) 입간판				
가) 면적 1m <sup>2</sup>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m <sup>2</sup> 초과 2m <sup>2</sup>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m <sup>2</sup> 초과 3m <sup>2</sup>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m <sup>2</sup> 초과하는 면적 0.5m <sup>2</sup> 당		80만원 + 8만원	105만원 + 10만원	135만원 + 13만원
2) 현수막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

- 가. -----
- 나. -----
- 다. -----
- 라.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	-----			
1) -----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2) 현수막(가로등 현수				

가) 면적 3㎡ 이하		14만 원	18만 원	23만 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 원	42만 원	55만 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 원	105만 원	135만 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 원 + 15만 원을 더한 금액	105만 원 + 20만 원을 더한 금액	135만 원 + 25만 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 원	장당 30천 원	장당 45천 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 원	장당 40천 원	장당 55천 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 원	장당 50천 원	장당 65천 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 원	장당 60천 원	장당 80천 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 원	49만 원	100만 원

기 포함)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3) --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나. -----				
1) -----				
2) -----				
3) -----				
다. -----				
1) -----				
2) -----				
3) -----				
4) -----				
라 -----		--	--	--
마.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6. (생략)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20. 1. 7.>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하여야 하며,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하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2021.3.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조례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시장이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0.7.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9.2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영 제20조 및 도 조례제12조제3항

제8호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되고, 주민협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주민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김포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0.7.28.>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28.>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회”는 “정비협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가 허용되는 구역의 범위
2.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3., 2020.7.28.>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9.21.>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022.9.21.>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2022.9.21.>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022.9.21.>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2022.9.1.>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28.>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김포도시관리공사 <개정 2020.12.31.>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의2(정당현수막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정당현수막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2항, 영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라 그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7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3.27.]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2.9.21.>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1.3.31.>

가. 관내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3,000원
2)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30,000원
2)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15,000원
나.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35,000원
나.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15,000원
나.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3,000원
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400,000원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다.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가.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1) 10㎡ 이하	3,000원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3,000원
2)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3. 입간판(1건)	3,000원
14. 벽보(1건)	3,000원
15. 전단(500매마다)	3,000원
16. 전자계시대(1건)	3,000원
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계시대는 제외한다)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한다)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시행령 별표 8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여 계산한다.
- 나.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제2호 가목1)라)·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라.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100만원

**참고 3**

**경기도 시·군 가로등 현수기 운영 현황**

(2024. 10. 20 기준)

시군명	가로등 현수기 계첨대 현황(조)	민간 현수기 계시가능 여부	계시기간	신고(협의)방식
<b>계</b>	<b>89,773</b>	<b>22개 시군 가능</b>	<b>평균 15일</b>	<b>선착순 23개</b>
수원시	2,592	○	14일	선착순
용인시	계첨 시 별도 탈부착	○	30일	선착순
고양시	880	○	14일	선착순
화성시	345	○	공공 30일, 민간 15일	선착순
성남시	계첨 시 별도 탈부착	○	공공 30일, 민간 15일	선착순
부천시	3,019	○	공공 30일, 민간 15일	선착순
남양주시	계첨 시 별도 탈부착	○	15일	선착순
안산시	1,339	○	15일	선착순
평택시	확인 불가	○	30일	선착순
안양시	1048	○	15일	선착순
시흥시	확인불가	○	15일	선착순
파주시	22,345	○	공공 20일	국가 → 지자체
<b>김포시</b>	<b>26,916</b>	<b>X</b>	<b>공공 15일</b>	<b>선착순</b>
의정부시	확인 불가	○	15일	선착순
광주시	12,991	○	공공 30일, 민간 15일	선착순
하남시	확인 불가	○	14일	선착순
광명시	200	○	15일	선착순
군포시	224	○	공공 30일, 민간 15일	선착순
오산시	2,248	X	15일	별도방식 없음
양주시	180	X	제한없음	별도방식 없음
이천시	500	○	공공 30일, 민간 15일	행사주체 우선
안성시	478	X	-	-
구리시	11,000	○	15일	선착순
의왕시	미운영	X	-	-
포천시	110	X	30일	선착순
양평군	1,220	X	-	-
여주시	108	X	15일	접수 선착순
동두천시	1,173	○	15일	접수 선착순
과천시	645	○	30일	관내 행사 우선
가평군	166	○	14일	선착순 / 읍·면 신고
연천군	46	X	30일	선착순

※ 자료출처 : 경기도 31개 시군 취합자료

**붙임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 책으로 새로고침!"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신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장(클린도시과장)  
(경유)

제목 2025년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5년 제2회 김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심의기간 : 2025. 6. 23.(월) ~ 6. 25.(수)
-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 3. 심의위원 : 위원장(부시장) 외 10명(전체 위원수 13명)
- 4. 심의결과

심의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안부서
2025-3	김포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예 따른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규정	원안가결	클린도시과

붙임 심의의결서 1부. 끝.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담당자	<b>김지훈</b>	서기	<b>박화숙</b>	간사	<b>한은지</b>	전공 2025. 6. 26.
-----	------------	----	------------	----	------------	-----------------

협조자

시행 (2025. 6. 26.) 접수: 클린도시과-8468 (2025. 6. 26.)

무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무동로 1, (사무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5257 팩스번호 031-980-2799 / [kju629@korea.kr](mailto:kju629@korea.kr) / 비공개(5)

"책으로 물드는 도시, 김포!"